

개인정보 보호 관점으로 바라본 안전한 정보공개 안내서

2017.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1. 발간 배경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 ✓ 개인정보는 개인에게는 인권, 기업에는 영업자산 및 사회활동의 기반, 국가에게는 신뢰도와 밀접하게 연관
- ✓ 자기정보 결정권에 대한 관심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증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대
- ✓ 서울시의 모든 행정정보 제공과 시민의 자유로운 정책 참여를 위한 기틀 확립

○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준수

-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11.3.29 제정되어 '11.9.30부터 시행 중으로 6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개인정보 노출사고가 발생
- ✓ 정보공개법에 원문정보 사전공개 조항이 신설되며('13.8.6),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재문서 등 각종 행정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 의무화
- ✓ 개인정보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 부서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필요

2. 목적 및 필요성

- ✓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한 결재문서에 대해 서울시 내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결재문서 공개 시 비공개 항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 ✓ 실제 노출 사례를 통해 비공개 처리 기준과 대상 정보에 대한 유의사항을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업무 인수·인계 및 처리과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유용한 가이드라인 마련

목 차

제1장 개인정보 정의 및 종류 1

제2장 개인정보 노출 8

제3장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 25

제4장 서울시 주요 개인정보 노출 문서 39

제5장 부록 54

제1장 개인정보 정의 및 종류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의
2. 개인정보의 개념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4. 법령의 적용
5. 위반 시 벌칙사항
6. 주요 개인정보 용어 정의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의 범위

- 1) 자연인에 관한 정보
 -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2)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
 -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 3)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됨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개인정보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짐
- 4) 정보의 종류·형태 제한 없음
 - 문자·음성·부호·영상 등 정보의 종류나 형태는 제한이 없음

- ✓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도 해당



개인정보의 예시

구분		내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ID/PW,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의 정보, IP주소
신체적 정보	신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의료/건강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	도서·비디오 대여기록, 신문·잡지 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 내역, 인터넷 검색내역
	신념/사상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금융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신용	개인신용평가정보, 대출·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범죄 등	전과·범죄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근로	직장,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평가기록
기타	통신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위치	IP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병역	병역여부, 기간, 군번, 계급, 근무부대, 주특기
	화상	CCTV 등 영상매체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 ✓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해당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 목적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OECD 가이드라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수집 제한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 안전성 · 최신성 보장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명확화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이용 제한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안전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공개성의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 참여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 · 실처, 신뢰성 확보 노력	책임의 원칙

4. 법령의 적용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므로
- 업무 처리 중 해당 업무에서 규율하고 있는 다른 법령 등에 개인정보 처리 및 공개에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반 시 벌칙사항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 내용	처벌 및 벌칙
수집 · 이용	민감정보(사상 · 신념 · 정당가입 · 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 · 여권 · 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탈의실 · 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공 · 위탁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문서로 위탁 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기준 위반(제25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관리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 ·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제3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 · 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 · 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파기	관계물품 · 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6. 주요 개인정보 용어 정의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4호)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 위치정보서비스

: 기지국이나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뉴미디어 서비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고유식별정보

: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유출신고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자치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 유출사고

: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사고(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6호)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하도급, 시간제 등 모든 근로 형태를 불문하며,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제28조)

○ 보조저장매체

: USB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CD, DVD, 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제2장 개인정보 노출

1. 개인정보 노출 사례
2. 개인정보 노출 유형 분석
3. 개인정보 침해 상담 Q&A

1. 개인정보 노출 사례

정보소통광장에서 공개되는 행정정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결재문서에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고 대시민공개로 기안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고 다수 발생

가. (서울신문)서울시 메르스 격리대상자 개인정보 ⇨ 정보소통광장 노출

서울신문 2015년 06월 10일 수요일

서울신문 2015년 06월 10일 수요일 001면 종합

서울시, 메르스 격리대상자 개인정보 유출

상상병원 의사 참석 재건축희 150명 이틀-휴대전화 번호 등 시청 홈페이지 게재 하루 만에 삭제... 시 "실수로 명단 공개"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인 정보가 노출된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지난 달 30일 강남구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 총회가 개최된 서포구 양재동 1차회의 일출지 130명과 보안요원 30명 등 모두 160명이다. 당시 총회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상상사병원 의사 32명(해환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상에 있던 총회 참가자 160명이 자가격리 조처를 받은 바 있다.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지난 8일 오후 4시에만 '백업은 서울시상황 영으로 게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명부' 제목의 첨부 파일이 유출된 뒤 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8일 저녁 홈페이지에 박힌은 서울시 상황 영으로 게재한 '메르스(MERS) 대응관련 자가격리대상자 명부' 제목 문서에 자가격리 대상자 신상정보 명단(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실렸다고 밝혔다.

당부 격리 대상자의 경우 부분적으로 정보(가 누락되었던 대부분은 이름-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이 노출된 채 실수로 공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실을 오천 채 자가격리 대상자들과 개인 정보를 당국에 비치했다가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11시쯤 삭제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일부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공개처서는 안 될 민간용 개인 정보"라며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명단으로 정보 유출이 가능하도록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실을 오천 채 자가격리 대상자들과 개인 정보를 당국에 비치했다가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11시쯤 삭제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일부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공개처서는 안 될 민간용 개인 정보"라며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명단으로 정보 유출이 가능하도록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실을 오천 채 자가격리 대상자들과 개인 정보를 당국에 비치했다가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11시쯤 삭제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일부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공개처서는 안 될 민간용 개인 정보"라며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명단으로 정보 유출이 가능하도록 공개했다."

나. (조선일보)서울시 메르스 자가격리대상자 신상정보 ⇨ 정보소통광장 노출

朝鮮日報 2015년 06월 10일 수요일

朝鮮日報 2015년 06월 10일 수요일 A10면 종합

서울시, 自家격리 대상자 신상정보 홈페이지 공개 논란

이튿날 오전 11시쯤 삭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상세히 적힌 서류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홈페이지 결재서류 코너에 '메르스(MERS) 대응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명부' 제목의 문서가 공개됐다. 이튿날 오전 11시쯤 삭제됐다.

이런 상황은 메르스 확진 환자나 격리 대상자 개인 정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감청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정보 공유에는 원칙이 있다"며 "개인 정보와 관련한 것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보건담당 공무원에 비상이 걸려 있다"며 "해당 문서도 담당 직원이 맡게 문서를 끝자판은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윤민 기자

다. (동아일보) 질병상담 자료, 재개발보상자 개인정보 ⇨ 정보소통광장 노출

東亞日報 2016년 07월 13일 수요일

東亞日報 2016년 07월 13일 수요일 A14면 사회

오늘 정보보호의 날... 당신의 정보는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질병상담 자료, 홈페이지 올리는 서울시

1. 서울 시내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21년 차 진급 희망 권모 씨(48)는 10년 정부의 공무상임직위 각종 집행에 사달과 관련된 처분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6월 인사를 앞두고 치료비를 위해 현 근무처에 남게 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 상담을 했다. 그런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접속하면 누구나 그의 고충 내용과 병력 진단서를 볼 수 있었다. 김 씨는 "정보보호도 극소수만 아는 내용이었다..."라며 불쾌해했다.

2. 올해 1월 중작구 재개발 보상비로 5억여 원을 받은 조모 씨(52)는 실명과 집 주소, 보상 내용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뒤 보이스피싱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본보가 제5회 정보보호의 날(13일)을 맞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내부 결재 문서 원문 공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중앙정부의 정보공개포털(open.go.kr)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모두 개인정보, 보호가 부실했다.

2013년 분홍 연 정보소통광장은 올해 7월 10일 기준으로 누적된 문서 건수가 1080만 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1만8000여 건씩 과장급 이상의 내부 결재 문서를 공개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데르스오르디안-중동호흡기증후군(격) 대상자 실명 명단을 노출해 비판을 받았던 곳으로 당시 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나아진 건 없었다. 검색한 지 1분도 안 돼 시민과 공무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주민등록 등본도 확보할 수 있었다. 민원 회신 문서의 경우 공개 처리된 1만4000여 건 대부분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시 정보소통혁신팀 관계자는 "문서의 양이 방대해 모든 문서를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비공개 상장은 직원 개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확고한 설명을 했다.

정보공개포털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곳을

본보가 11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시민과 공무원의 개인정보, 진료부처 인사 고충 상담을 위해 제출한 병력 진단서, 김 씨의 인사 자료를 상위 부서에 제출한 해당 소명서 공문, 시민 조모 씨가 받은 재개발 보상금 결정 내용,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안내서 시정 협의

보물 자원으로 읽어 비실명화하는 시스템을 갖춰지던 시진, PDS와 같은 이미지 형태의 원부 파일은 인식률이 떨어진다. 올해 3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정부서울청사 출입과 해산 때 지적된 것처럼 파일에 암호를 걸는 대안이 있지만 사전 발행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20만2000여 건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이성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도 행정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할 게 문제"라며 "이런걸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노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건 이를 억울한 2차 범죄 위험에 당사자를 내모는 사생활 침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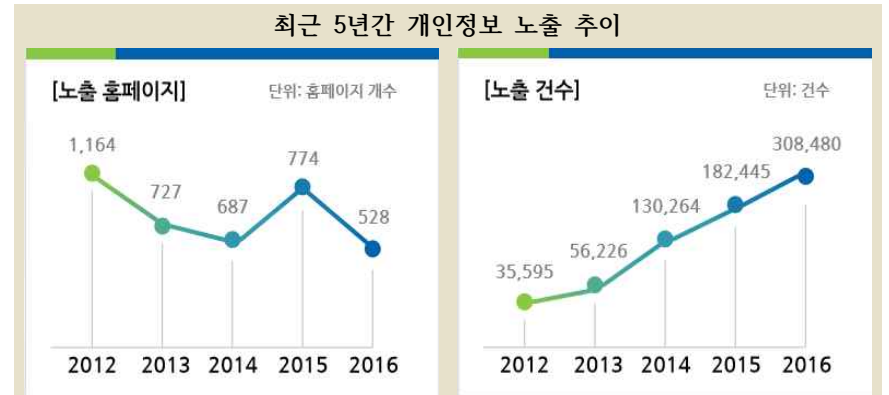
시형에 기자 skywe08@donga.com
 바다에 인터넷가 서울에서 언론홍보차 4학년

메르스 격리자 유출 '정보소통광장' 내부결재 문서, 보호막 풀린채 공개
 공황장애로 인사상향 요청했더니 고충 내용에 진단서까지 노출
 재개발 보상비 5억 받은 80대는 이름-주소 드러나 보이스피싱 시달려

2. 개인정보 노출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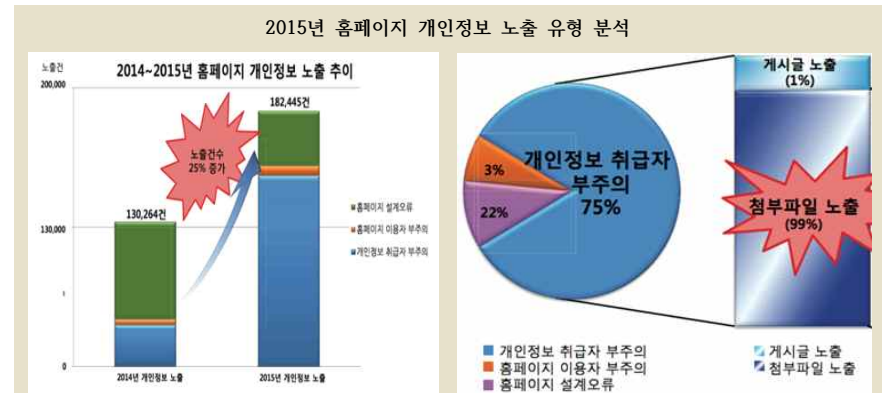
가. 개인정보 노출 추이

- KISA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노출 경향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노출 홈페이지 수는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노출건수는 약 9배 증가함



나. 개인정보 노출 유형 분석

- KISA에서 발표한 자료로 2015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유형을 분석해보면, 2014년 대비 2015년 홈페이지 노출건수가 약 40%(52,181건)이 증가
-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가 75%로 1위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 중 첨부파일 노출 비율이 99%에 해당함



다. 첨부파일 노출 유형 TOP3

-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주어진 “기능”과 “옵션”을 통해 일부 업무 담당자들이 잘못된 사용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 엑셀파일 노출 원인 : ① sheet 숨기기 처리
 - ② 함수 치환 처리
 - ③ 행 / 열 숨기기
 - ④ Sheet 보호 처리
 - ⑤ 글자색을 배경색과 같게 처리
 - ⑥ 메모에 **개인정보**를 입력
 - ⑦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체 삽입(OLE개체)
- 한글파일 노출 원인 : 한글 서식에 **개인정보**가 포함
- 이미지파일 노출 원인 : 이미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



라. 개인정보 노출 형태(공공기관)

대분류	중분류	주요 노출 형태	노출 원인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글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정보조회 “일반정보” 글에서 운전면허번호 노출 	게시글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발표 게시판의 ‘00시험합격자 명단’ 첨부파일에서 여권번호 노출 • 임대안내 게시판의 신청서류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시험공고/공지사항 게시판의 ‘공채 임용유예자 명단’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첨부파일 노출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과제검색 게시판의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노출 	첨부파일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창 게시판의 ‘배출업소현황’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우리동소식 게시판의 ‘알선대상자 명단’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00시 선수명단’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행정처부 명령서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첨부파일 노출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행정공개’, ‘가정통신문’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행정실 게시판의 ‘운영위원회’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부별업무자료의 ‘스카우트’ 알집파일에 존재하는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첨부파일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센터의 ‘학사/학적변동’ 글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사이버강좌의 ‘개설강좌’글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게시글 노출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원 수강신청’파일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노출 • 행정실 공지사항 게시판의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노출 	첨부파일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대학교 관리자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홈페이지 설계 및 관리 미흡

마. 개인정보 노출 형태(민간기관)

대분류	중분류	주요 노출 형태	노출 원인
민간 기관	여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예약확인 요청’글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노출 ‘현금 영수증 요청’글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게시글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센터의 ‘질문과 답변’글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이용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 FAQ’글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게시글 노출
	의료업	건강상담의 ‘복약상담’글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게시글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광장의 ‘채용공고’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첨부파일 노출
		건강진단 결과표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홈페이지 설계 및 관리 미흡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성적기록’조회 게시판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참가팀 소개’ 게시판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홈페이지 설계 및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신청서’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내용증명서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첨부파일 노출
		본회 소개의 ‘회원명단’글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게시글 노출
	단체	자료실 게시판의 ‘경매실적’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노출	첨부파일 노출
		재단소개의 ‘정관/이사회’ 첨부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첨부파일 노출

3. 개인정보 침해 상담 Q&A

본 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7.1) 등을 인용 또는 참고하였으며, 본 사례집은 법률적 책임은 지지 않으며, 각 사례에 따른 세부 법률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침해 상담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다음과 같은 각 조에 해당하는 내용임
- ✓ 제2조(정의)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제29조(안전조치의무)

Q 기업이나, 단체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법인이거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정보 즉, 업체명, 설립연도, 사업장주소, 주요 생산품,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담당자 성명, 업무상(회사) 전화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차량번호 하나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나요?

A 구체적으로 해당 차량번호가 수집 및 이용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차량 번호 하나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여지가 없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등과 쉽게 결합하여 등록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Q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단독으로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A 전화번호는 단독으로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부담 하는 대상(개인정보 처리자)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적인 친분관계를 위하여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저장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포털사이트의 주소록에 개인이 지인의 정보를 업로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A '개인정보처리자'라 함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이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지인의 정보를 포털사이트 주소록에 저장하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으로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영리법인이 아닌, 후원·기부재단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비영리법인인 기부재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어느 법이 더 우선 적용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준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조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문별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고 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집단분쟁 조정,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등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Q 강의 등록을 위해 수강생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지역, 출신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으라고 하는데, 과도한 수집이 아닌가요?

A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강생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수강생 대장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 강의를 위해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출신학교 등을 수집하는 것은 과도한 수집이 될 수 있으므로, 선택적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선택적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에 따른 학원 등록 등 당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Q 별과금 등 관련한 공시송달 공고를 검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성명, 징제번호, 등기번호, 수령여부’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 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호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고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공개하도록 한 항목은 공개 가능 하나 공개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건강, 성생활을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처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에서 요구하는 이외의 사항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감정보의 범위

- 개인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하는 믿음·생각 등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적 취향 등의 정보

Q 채용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퇴직하고 나서 개인정보를 20년 동안 보유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A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고지 후 동의를 받는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입증책임, 즉 보유해야 하는 필수기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의 감사부서나 상급기관에서 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A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제1항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

-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Q 마음에 드는 여행상품이 있어 전화로 상담을 하였는데 가입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행사에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오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A 만약 고객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의 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가입조건 등을 확인하는 상담만 하였을 뿐이고 이후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담이라는 최초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상담 종료 후, 비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단,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향후 상품계약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개인정보 수집 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 진료일시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진료예약, 진단 결과의 통보 등 진료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수집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 병원에 방문한 만14세 미만 아동에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 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 진료일시 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나 만14세 미만 아동 모두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Q 병원 진료 기록을 삭제하고 싶은데, 병원 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만약 고객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의 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가입조건 등을 확인하는 상담만 하였을 뿐이고 이후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담이라는 최초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상담 종료 후, 비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단,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향후 상품계약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최초 개인정보 수집 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인가요?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Q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위탁은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위탁내용과 수탁자는 고지해야 합니다.

위탁 업무 등의 공개 방법

참고

-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소재하는 시·도 이상 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 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 게 발급하는 방법

Q 위탁하는 업무가 1회성인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하나요?

A 단발성일지라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감독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최종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정보주체에게 서면, 이메일, 팩스, 전화, SMS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유출사실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입니다. 단, 1만명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신고서'에 따라 유출사실 신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에 유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 참고**
-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개인정보의 유출)

Q 서비스 만료 후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더니 불가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삭제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통지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1호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

1. 개인정보 수준진단 개요
2. 개인정보 모니터링 결과
3.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

1. 개인정보 수준진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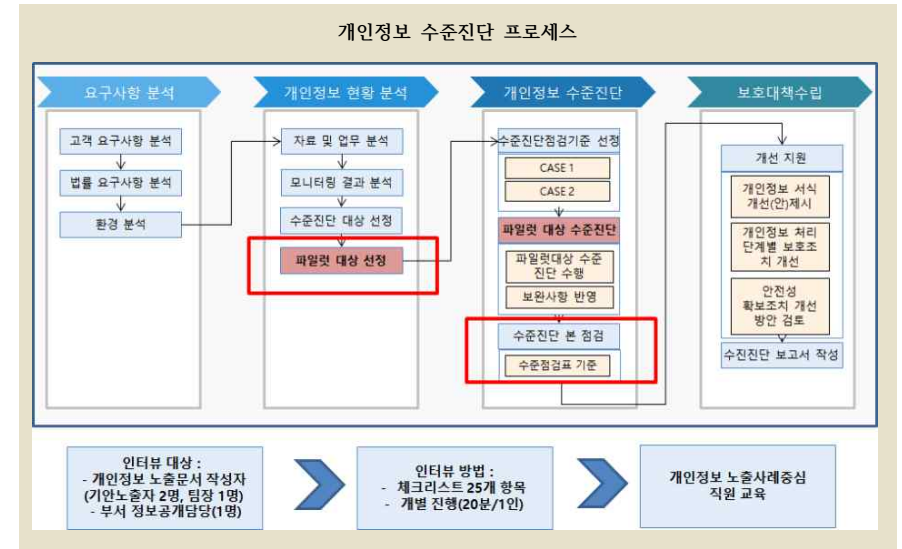
가. 진단 개요

-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서울시 모든 부서에게 생산되고 있는 결재문서에 대해 다음날 공개됨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본문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부서에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하여 결재를 상신하여야 함
- 그러나 결재문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계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2017년 정보소통광장 개인정보 수준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 및 문서공개시스템 개선 반영
-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중 서울시 각 부서 업무담당자에 의한 노출됐던 문서의 유형 및 패턴별 점검 후 추후 노출 방지
-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업무관리시스템의 행정정보를 통해 시민과 자유롭게 공유·소통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협치의 기반이 되는 정보공개 서비스의 기반 마련

나. 진단 기간 및 평가 방법

- 개인정보 수준진단에 대한 전체 진단기간은 2017.2.1.부터 10개월간 각 부서를 현장 방문하여 부서의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인식에 대한 수준진단을 실시함
- 2016.7.25. ~ 2017.3.12. 기간 동안 업무관리시스템의 결재문서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추출한 문서를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기 전 수동 점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한 결과 개인정보 다빈도 노출부서 중 상위 50개 부서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수준진단을 진행
- 개인정보 수준진단은 2차로 나누어 1차 본청 및 본부사업소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3개 부서에 대한 파일럿 점검을 진행한 후 진단 점검표 및 점검방향에 대한 미비점을 확인 및 수정 후 2차 본점검으로 47개 부서를 점검함

- 개인정보 수준진단을 실시한 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음



2. 개인정보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기간 동안 대국민공개로 총 3,054건의 첨부파일 노출이 발생함 (초과근무수당 공문서 제외)
- 총 노출문서는 상위 20개 실·본부·국이 전체의 90.7%를 차지하고 있음
- 결재 공문에 대해 노출했던 원천부서 담당자수는 총 1,189명으로 1인당 평균 2.6건에 대하여 노출하고 있었으며, 노출대상자는 반복적으로 결재 시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을 하고 있었음

- 전체 노출하고 있는 본부 중 소방재난본부가 타 부서에 비해 노출건수가 많았으며, 소방재난본부의 151개 부서(과)에서 노출이 발생함에 따라 전체 노출의 34%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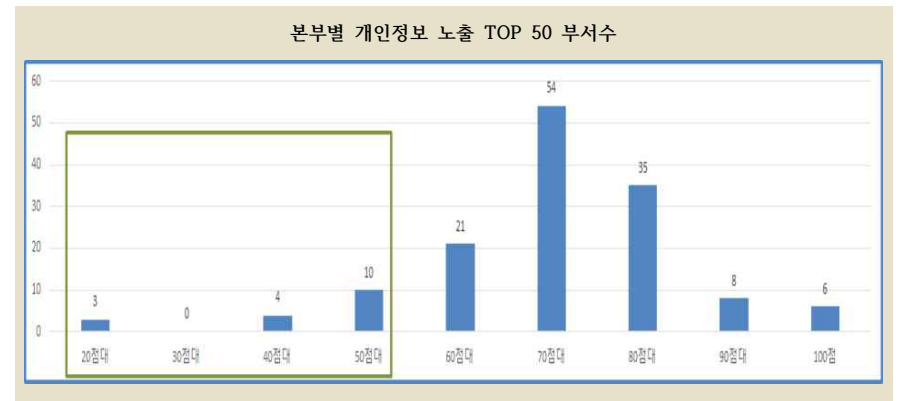
- 모니터링 기간중 노출 상위 TOP50을 선정하여 50개 부서에 대해 수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TOP50에 포함된 실·본부·국은 아래와 같음



3.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

가. 수준진단 점수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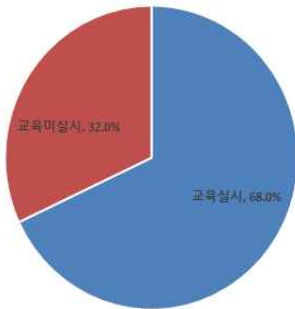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준진단은 1)개인정보교육, 2)업무인수인계, 3)개인정보 노출 및 관리, 4)관련법령인식, 5)업무관리시스템, 6)개인정보파일, 7)단말기보호조치와 같은 7개의 통제 분야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였음
- 개인정보 노출 부서에 대한 수준진단 결과 서울시의 전체적인 수준은 75.8%의 수준을 나타냄
- 수준진단 기간 중 1개 부서는 조직 변경이 되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49개 부서를 점검하였으며, 총 49개 부서 중 40%에 해당하는 20개 부서가 평균(75.9%) 미만의 수준이었음
- 수준진단 점수별 분포는 평균점수와 가까운 60점대부터 80점대의 분포가 가장 많았으나, 40~50점대의 담당자 및 20점대의 수준의 담당자들도 나타남



나. (서울시 전체) 개인정보 교육 실시 현황

- 수준진단 결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개인정보 교육은 전체 68%에 해당하는 담당자들만 교육을 받았으며, 나머지 32%에 해당하는 담당자들은 서울시청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교육이나 부서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도 받지 않음
- 서울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담당자들은 시민의 정보를 취급 하는 담당자들만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닌,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이에 대해 결재문서를 통한 정보공개를 수행함에 따라 서울시 전체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자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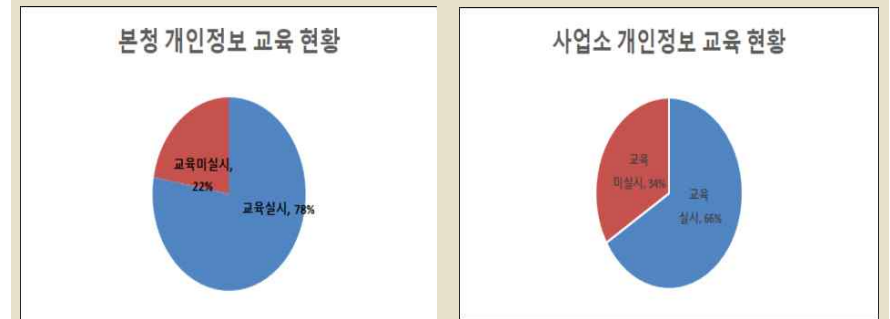
개인정보 교육 실시 비율



다. (본청/사업소별) 개인정보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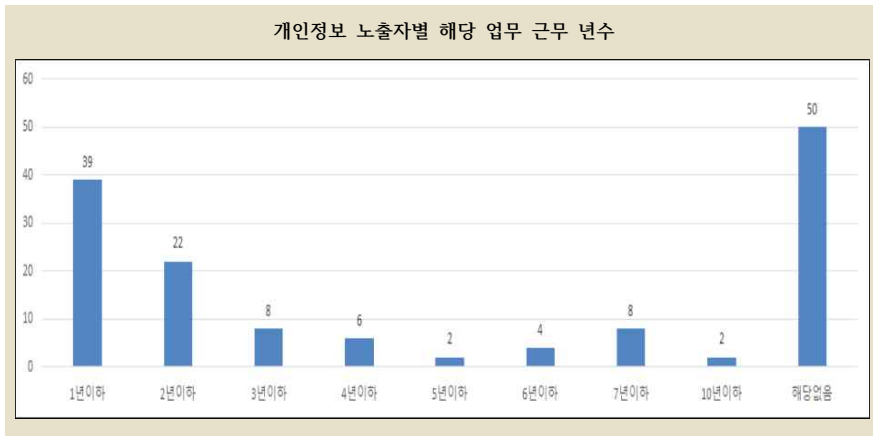
- 개인정보 노출자 중 본청은 78%에 해당하는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교육을 받음
- 개인정보 노출자 중 본부-사업소는 66%에 해당하는 인원만 개인정보 교육을 받음
- 본부사업소에 비해 본청의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교육을 더 많이 받았으며, 개인정보 수준진단 TOP50에 포함된 부서도 본청보다는 본부사업소가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사업소별 개인정보 교육 실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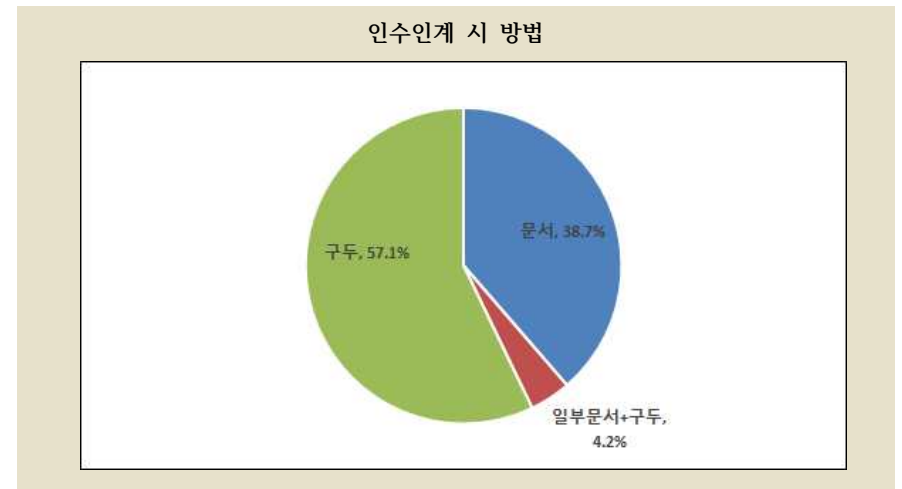
라. 노출자별 해당 업무 근무 년수 현황

- 개인정보 노출자들에 대한 해당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기간을 확인해본 결과 업무를 맡은 지 1년 이하의 담당자들이 제일 많음에 따라 보직 변경을 통한 업무가 변경 시 개인정보 교육이 필요함
- 담당 업무를 맡은 지 오래 될수록 개인정보 노출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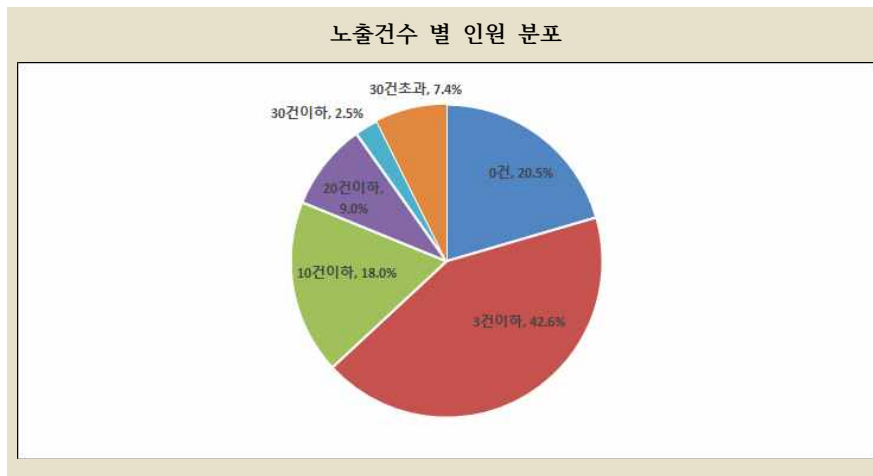
마. 업무 인수인계 방법

- 인수인계 시 57.1%가 구두를 통한 간단한 인수인계를 하는데, 후임자가 인계한 후 업무 특성에 따른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은 지 1년 이내의 담당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노출이 발생
- 인수인계 시 업무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 사항을 문서를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음



바. 개인정보 노출자 노출 건수

- 개인정보 노출자들의 노출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3건 이하는 42.6%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업무 중 실수나 업무량이 많아 모든 결재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노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노출건수가 3건 이상 노출자들은 36.9%에 해당되며, **30건 초과도 7.4%**에 해당됨에 따라 많은 건수의 노출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개인정보 노출자 중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니터링 기간 중 1인당 **평균 약 6.9건의** 개인정보를 노출함



사. 개인정보 유/노출 시 대응방법 인식

- 인터뷰 대상자 중 65.6%는 개인정보 유/노출 시 상급수서에 연락 후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음
- 대시민공개로 기안한 결재문서에서 개인정보 노출 시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부분공개 및 비공개로 수정하는 방법 숙지 필요(정보공개정책과에서 발행한 "2017 정보공개업무 매뉴얼"(2016.12) 참조)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 통지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① 통지 대상 : 1건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관련사실 통지
- ② 통지 시기 : 5일 이내
- ③ 통지 방법 : 개별통지 : 서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문자전송 등
(1만명 이상 유출 시 서면 등의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7일 이상 게재)
- ④ 통지 내용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방법, 사업자의 대응조치, 피해구제 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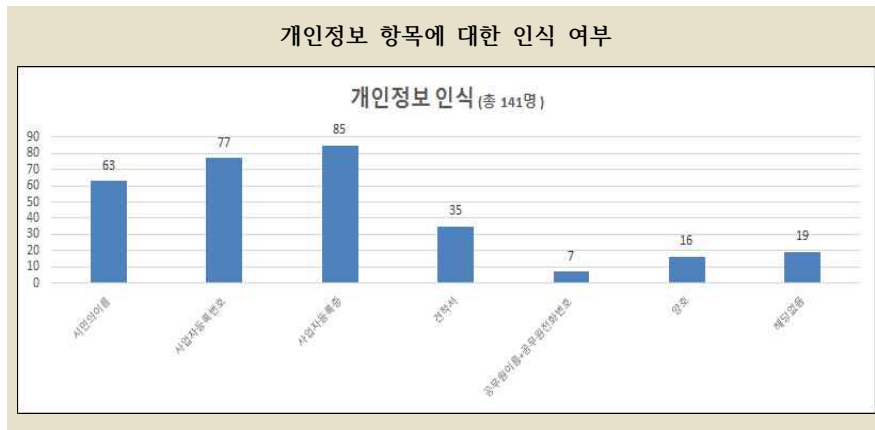
○ 개인정보 유출 시 행정자치부/전문기관(KISA)에 신고 방법

- ① 신고 대상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정자치부, 전문기관에 신고
- ② 신고 시기 : 5일 이내
- ③ 신고 방법 : 전화, 전자우편, 팩스
- ④ 신고 내용 : 통지내용,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및 조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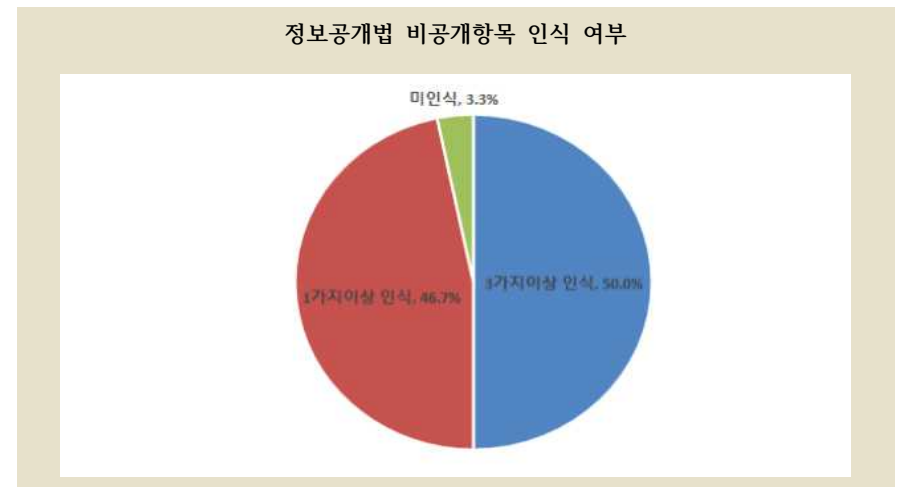
아. 개인정보 인식

-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및 정의에 따른 업무유형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
- 전체 인터뷰 대상자 중 13.1%만이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구분
- 인터뷰 대상자 중 63.1%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69.7%에 해당하는 담당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인정보로 인식
 - ✓ 사업자 등록증은 법인사업자 등록증과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구분
 - ✓ 법인사업자등록증은 업체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님
 - ✓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업자의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보호해야할 개인정보임
- 인터뷰 대상자 51.6%는 결재 문서상에 시민의 이름만 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있음
 - ✓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개인의 이름만으로는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개인정보 보호법 2조)



자. 정보공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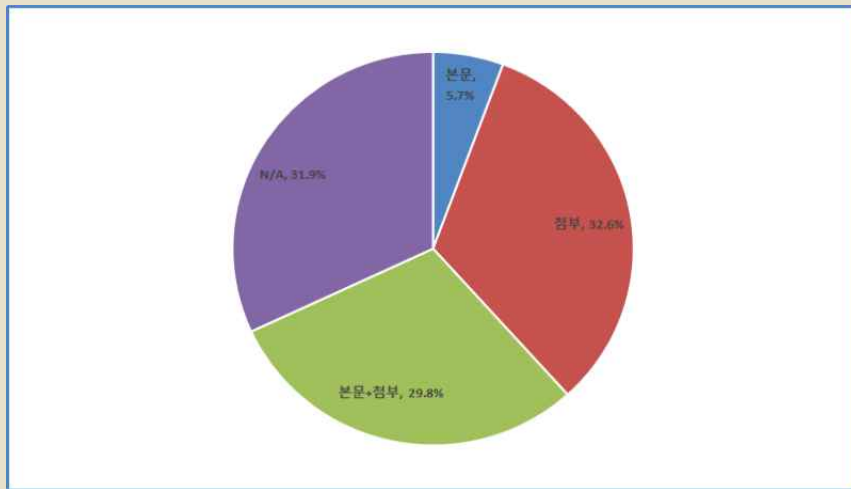
- 모든 담당자들은 정보공개법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3.3%에 해당하는 직원은 비공개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언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보소통광장을 통한 공개가 수년이 지났지만 일부 담당자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도 없음
- 비공개 대상정보 8기지 호수 중 96.7%에 해당하는 담당자들은 개인정보 항목이 비공개 항목임을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인식"의 결과처럼 개인정보 항목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함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1항 1호~8호까지 자주 사용하는 업무 외에도 모든 비공개 호수에 대한 인식 필요
 - ✓ 비공개항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인지하고 있어야 업무 중 발생하는 경우에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항목과 업무관리시스템의 비공개항목(1~8호)이 동일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함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과 업무관리시스템의 공개제한항목 1~8호까지 체크하는 것은 같은 항목임
 - ✓ 업무관리시스템의 공개제한항목 1~8호 체크는 법령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필히 바른 체크를 통하여 법적 준거성 확립 필요



차. 노출문서 서식 확인

- 인터뷰 대상자 중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은 정보화진흥원(KISA)에서 발표한 자료와 같이 첨부파일을 통한 노출이 가장 많음(62.4%)
- 전체 인터뷰 대상자 중 5.7%에 해당하는 담당자만이 본문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함
- 업무 담당자들은 임의의 결재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업무관리시스템의 결재문서 > 기안 > 공용서식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함에 따라 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서식이 변경될 경우 공용서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 업무 담당자들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PC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양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양식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필요
- 첨부파일에 대한 노출은 비교견적서, 진단서, 통장사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스캔하여 첨부 시 부분공개로 상신 필요(“4장 주로 노출되는 문서는?” 참조)

노출문서 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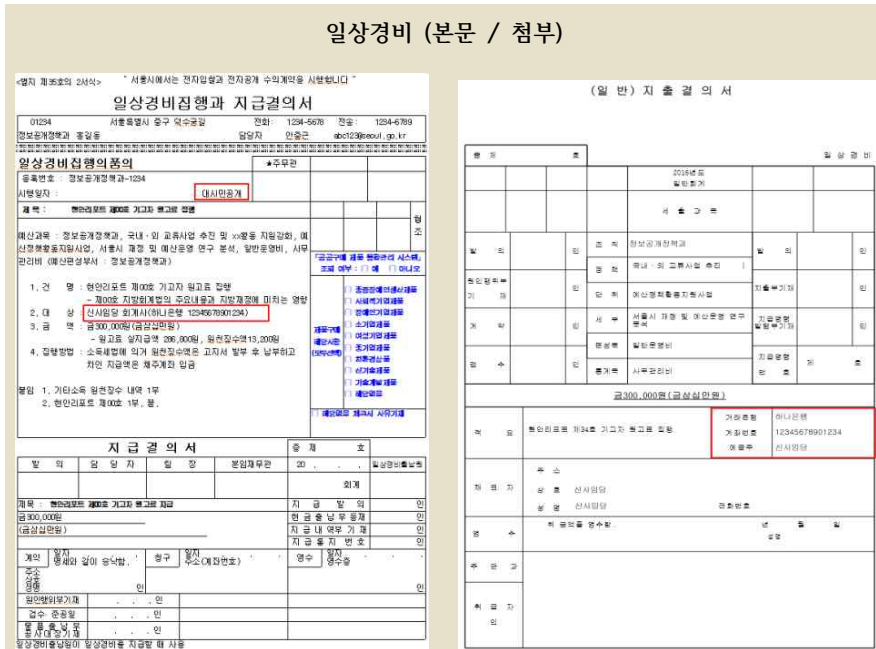
제4장 서울시 주요 개인정보 노출 문서

1. 주요 비공개정보 노출 문서 (개인정보, 보안정보 등)

1. 주요 비공개정보 노출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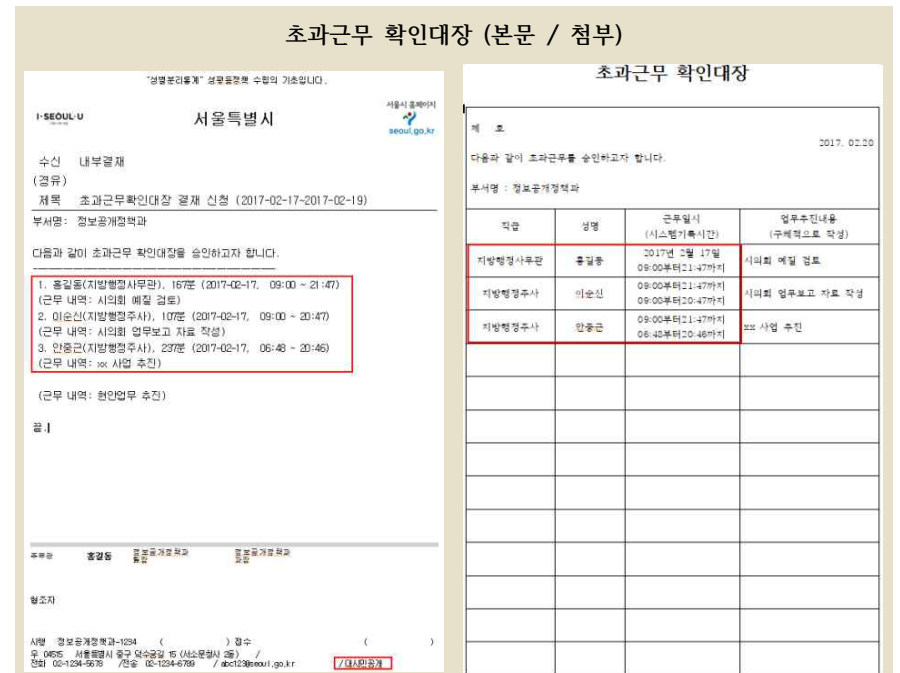
가. 일상경비(본문+첨부파일 노출)

-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를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채주의 계좌번호, 은행명 또는 전화번호 노출
- e-호조시스템을 통한 본문과 첨부파일에 같은 내용 포함됨에 따라 본문의 “지급결의서”와 첨부파일의 “지출결의서”에서 동일한 개인정보 노출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공개표시 및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본문은 은행명, 계좌번호 부분만 “비공개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②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③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나. 초과근무수당(본문+첨부파일 노출)

- “초과근무확인대상 결재 신청”을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개인의 수당을 유추할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 노출
- 복무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본문과 첨부파일에 같은 내용이 기재됨에 따라 본문의 “초과근무확인대상 결재신청”과 첨부파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상(PDF파일)”에서 동일한 개인정보 동시 노출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공개표시 및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본문은 이름과 직급 부분 또는 초과근무 시간 및 근무일시 부분만 “비공개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②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③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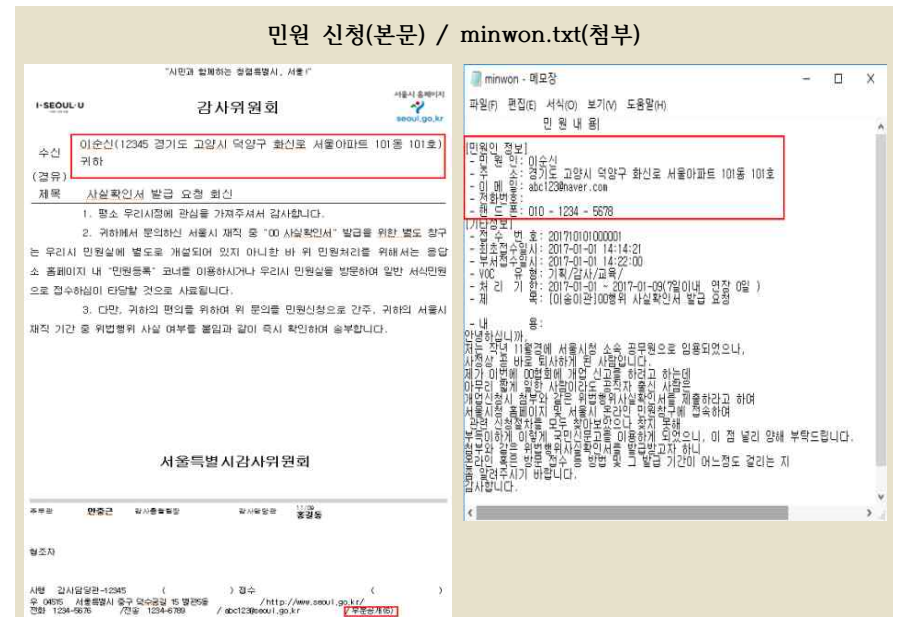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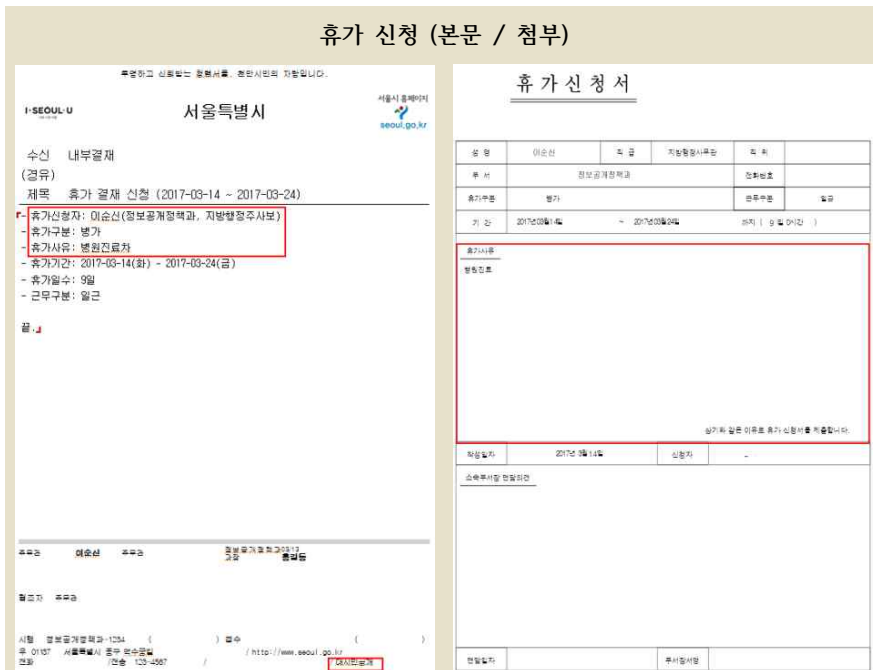
다. 휴가 신청(본문+첨부파일 노출)

- “휴가 결재 신청”을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휴가사유 노출(휴가 사유는 민감한 사항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복무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본문과 첨부파일에 같은 내용을 기재됨에 따라 본문의 “휴가 결재 신청”과 첨부파일의 “휴가신청서(PDF파일)”에서 동일한 개인정보 노출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공개표시 및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본문은 휴가사유 부분만 “**비공개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②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③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붉은색으로 표시된 개인정보 부분은 임의로 수정한 값으로 개인정보 아님

라. 민원회신(본문+첨부파일 노출)

- 민원처리 시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형식으로 작성되며 이때 **본문의 ‘수신’** 부분에 민원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마스킹 없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로 선택하여 첨부파일만 비공개되면서 본문(수신)에서 개인정보 노출
- 응답수 연계를 통한 민원회신 시 민원인 정보 등을 담은 minwon.txt 파일이 자동으로 첨부되는데, 공개유형을 공개로 처리함에 따라 민원인 개인정보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정보 노출
- 민원 신청처리에 대한 공문을 작성할 경우 본문 및 첨부파일에 대한 처리 필요
 - ① 본문의 개인정보항목을 비공개하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우측 상단의 “**비공개표시**”를 사용하여 **본문의 수신부분**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블록으로 지정하여 마스킹처리
 - ②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③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마. 공무원증 신청서(본문+첨부파일 노출)

- “전자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공무원증 분실 신청서” 등과 같은 결재문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본문에 그대로 기록하여 결재를 올리고 있으며 결재문서를 부분공개하거나 대시민공개를 선택하면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노출 발생
 - ✓ 본문의 성명, 생년월일, 혈액형과 같은 개인정보 노출
 - ✓ 첨부파일의 성명, 생년월일, 혈액형, 증명사진과 같은 개인정보 노출
- 공무원증신청에 대한 공문을 작성할 경우 본문 및 첨부파일에 대한 처리필요
 - ① 본문의 개인정보항목을 비공개하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우측 상단의 “**비공개표시**”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생년월일, 혈액형)는 블록으로 지정하여 마스킹처리
 - ②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③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바. 비교견적서(첨부파일 노출)

- 업체의 “견적서”와 “산출기초 조사서”는 업체의 제공가능 금액을 공개함에 따라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침해(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 ✓ 비교견적서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법의 비공개항목임
 - ✓ 업체에서 제공하는 물품 금액은 각 업체별로 서울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각 업체마다 경쟁을 위한 금액이 상이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각 업체별로 받은 견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견적서에 있는 영업직원의 이름, 회사 전화번호, 회사 주소, 회사 이메일주소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단체의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음
 - ✓ 그러나 **영업직원의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는 그 개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로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정보이므로 공개 금지
- 견적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②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7호(경영·영업상의 비밀)**” 체크
 - ※ 견적서에서 위의 개인정보 가 있을 경우 공개제한부분에서 “**6호(개인정보)**” 도 같이 체크

번	품명	단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1	공공기관	EA	100,000	120,000	100,000	200,000
소계						200,000
부가세						20,000
합계						220,000

품명	단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공공기관	EA	100,000	120,000	100,000	200,000
합계					400,000
부가세					40,000
합계					4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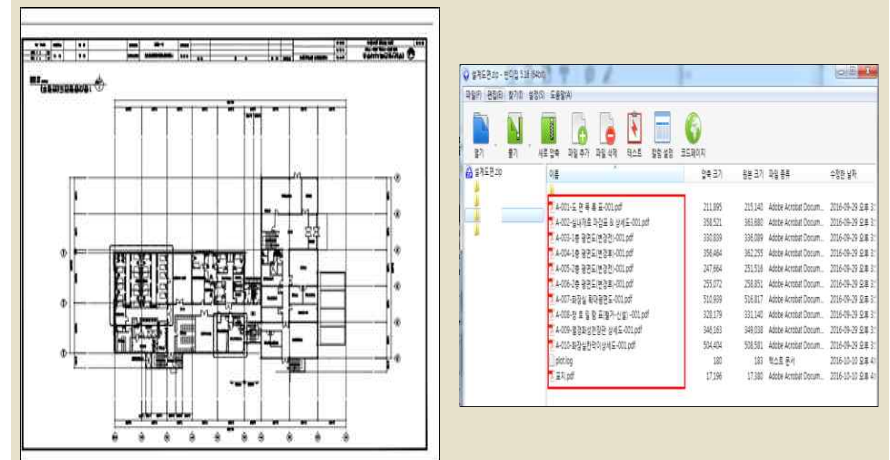
사. 자문회의, 심사점수, 각종 서명부(첨부파일 노출)

- 자문회의 중 자문위원의 발언내용, 입찰 참가 기업에 대한 심사위원별 심사점수와 같이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비공개처리해야 하지만 첨부파일에서 공개되면서 노출 발생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감사, 감독, 규제 및 의사 결정 관련 정보
 - ✓ 제안 업체별 총 평가 점수 및 순위 등은 공개해도 됨
-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들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소속, 성명, 서명 은행계좌, 연락처 등을 기록한 참석자 서명부 등을 첨부파일로 노출
 - ✓ 교육 참석자 명부, 참석서명부 등 각종 명부는 1건의 노출로 다수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함으로 주의 필요
- 자문회의의 결과 보고, 심사결과 보고 및 서명부 등을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②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5호(감사,감독,의사결정 관련)" 체크
 - ※ 참석부 및 비용지출내역서와 같이 개인정보가 있는 첨부파일을 추가할 경우 공개제한부분에서 "6호(개인정보)" 도 같이 체크

아. 준공도면(첨부파일 노출)

- 공공기관의 평면도, 상세도 및 지하철의 배관도의 일부 준공도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전체 도면을 압축한 압축파일을 첨부로 하는 결재문서를 대시민공개로 처리하여 노출 발생
 - ✓ 준공도면은 개인정보가 아니나 정보공개법에 비공개항목에 대한 노출임
 - ✓ 정보공개법 제9조1항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인감관리 대장 등
-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②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2호(국가중요시설 안전)" 체크

준공도면 (첨부) =>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국가중요시설 안전 관련) 노출



자문회의(본문) / 서명부(첨부)

00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7.1.2(월) 10:30 ~ 12:00
- 장 소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서윤서
 - 정보공개정책과
 - 권문자
 - 홍길동(연세대 00대학원장), 안중근(00연대 대표) 이순신(연세대 교수)

□ 회의 결과

(안중근 대표)

- 현재 ...중인 ...임에 따라 ...와 같은 문제 발생

(홍길동 교수)

- 현재 ...중인 ...임에 따라 ...와 가 더 적당

(이순신 교수)

- 현재 ...중인 ...임에 따라 ...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00전문가 자문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2(월) 10:30 ~
- 장 소 : 4층 공용 회의실
- 내 용 : 00 사업 기본계획(안)

□ 자문위원 참석 서명부

소속	성명	서명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연세대	홍길동		우리/ 123-456789-02-001	010-1234-5678
00대학원장				
00연대	안중근		우계국/ 010025-02-123456	010-2345-6789
연세대교수	이순신		우리/ 154-01-123456	010-3456-7890

자. 보험료 납부 등 인사관련 (첨부파일 노출)

-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후 납부잔액 내역은 공개하여야 하지만, 각각의 근로자별 보험료 상세 내역은 각 근로자의 임금내역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비공개처리해야 하지만 첨부파일에서 공개하면서 노출 발생
- 또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 외 계약사항, 용역사항, 휴가사항 등 인사 관련된 각종 결재문서의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발생
- 납부 상세내역 등 개인별 금액이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 다수의 첨부파일 중 일부만 비공개일 경우에는 비공개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첨부파일에 반드시 공개체크를 해야함
 - ②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차. 사업자등록증(첨부파일 노출)

-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각종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발생
 - ✓ 사업자 등록증은 법인사업자 등록증과 개인사업자 등록증으로 구분
 - ✓ 법인사업자 등록증은 업체에 대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가 아님
 - ✓ 개인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의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에 직접 개인정보(핸드폰번호, 이메일번호 등)를 기재하여 스캔한 문서를 첨부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발생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 (법인)사업자등록증은 공개유형을 “**대시민공개**” 체크하여 공개
 - ②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보험료 납부 (본문 / 첨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례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달리란 용역 개시 보고

1. 경보공개결격과-1234(2017.1.1.)호와 관련입니다.
2. 시달리란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용역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가. 업 체 명 : 00수익회사
나. 기 간 : 2017. 1. 1. ~ 12. 31
다. 관리인원 : 5명

담당업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업무개시
시달리란	의자용	55.4.28	관악구 우림동 20-10길	초등학교 시절부터	'17.0.1.
경비	이윤숙	56.8.20	노원구 우림동 20-30길	서울대 우정경비	'17.0.1.
경비	의희재	56.9.10	강북구 신월길 30길	야간경비	'17.0.1.
영소	신숙주	53.3.27	도봉구 우림동 40길	00영업	'17.0.1.
영소	김시윤	57.5.10	도봉구 신월길 30길	00산림개발	'17.0.1.

구분	성명	생년월일	사립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	
			개	잔액	개	잔액	개	잔액	개	잔액	개	잔액
합계	2,482,431	2,370,000	142,500	-	777,000	154,800	653,800	788,000	2,017,200	2,482,431	2,370,000	142,500
의자용	623,100	597,500	35,300	-	162,000	162,000	192,000	421,100	623,100	597,500	35,300	
이윤신	623,100	597,500	35,300	-	208,000	154,800	192,000	347,800	623,100	597,500	35,300	
이윤숙	623,100	597,500	35,300	-	162,000	162,000	192,000	421,100	623,100	597,500	35,300	
의희재	623,100	597,500	35,300	-	162,000	162,000	192,000	421,100	623,100	597,500	35,300	
신숙주	623,100	597,500	35,300	-	162,000	162,000	192,000	421,100	623,100	597,500	35,300	
김시윤	623,100	597,500	35,300	-	162,000	162,000	192,000	421,100	623,100	597,500	35,300	

(개인)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세특례자)

등록번호 : 105-03-12189

성명 : 이서연 생년월일 : 1999.01.01

주관등록번호 : 105-03-12189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2017

사업장종류 : 일반종류 업종 : 기타

국세

국부사유 : 영점

1999년 7월 13일

마포세무서장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104-07-84257

성명 : 김민경 생년월일 : 1999.01.01

주관등록번호 : 104-07-84257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사업장종류 : (일반)도매 업종 : 기타

국세

국부사유 : 영점

2012년 01월 06일

남대문세무서장

카. 통장사본 등(첨부파일 노출)

- 물품비용지불, 일상경비 등의 지급을 위해 개인 또는 채주의 통장을 스캔하여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결재 상신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 발생
 - ✓ 노출되는 개인정보 : 예금주, 거래은행, 예금계좌번호
-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②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통장 사본

타. 지급조서(첨부파일 노출)

- "봉급 및 수당지급조서", "복리후생비 지급조서", "축탁직 임금지급 내역", "거래처입력 폼" 등을 통해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들의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조서를 결재문서에 첨부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발생
 - ✓ 노출되는 개인정보 : 생년월일, 봉급 및 수당 지급금액, 거래은행, 예금계좌번호 등
- 각종 지급조서 등을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②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지급조서 => 계좌번호, 급여내역 노출

구분	내역	금액
1	기본급	2,700,000
2	수당	1,800,000
3	기타	420,000
4	합계	4,9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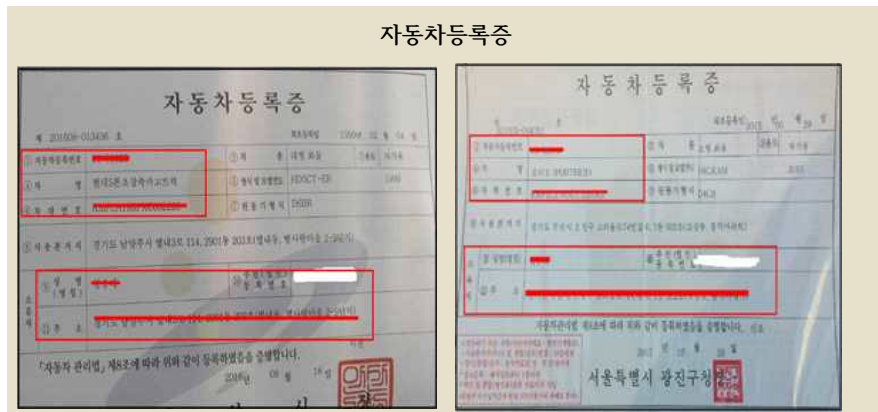
구분	내역	금액
1	국민연금	510,000
2	건강보험	450,000
3	고용보험	150,000
4	직업안정	150,000
5	산재보험	150,000
6	기타	150,000
7	합계	1,410,000

파. 자동차 등록증(첨부파일 노출)

- “자동차등록증(등록원부)”, “자동차보험증서”, “자동차 진단서”, “튜닝신청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첨부 결재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발생
 - ✓ 노출되는 개인정보 : 차량번호, 차대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 차대번호 노출 시 차대번호와 차량번호를 결합하여 악용하는 사례 발생하기 때문에 차대번호는 필히 노출 금지
 - ✓ 자동차등록원부등과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하므로 차량번호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라 볼 수 있음 (2장 Q&A 참조)
 - ✓ 시민의 자동차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는 개인정보라 볼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는 정보공개법 비공개항목 3호에 해당되므로 필히 보호 필요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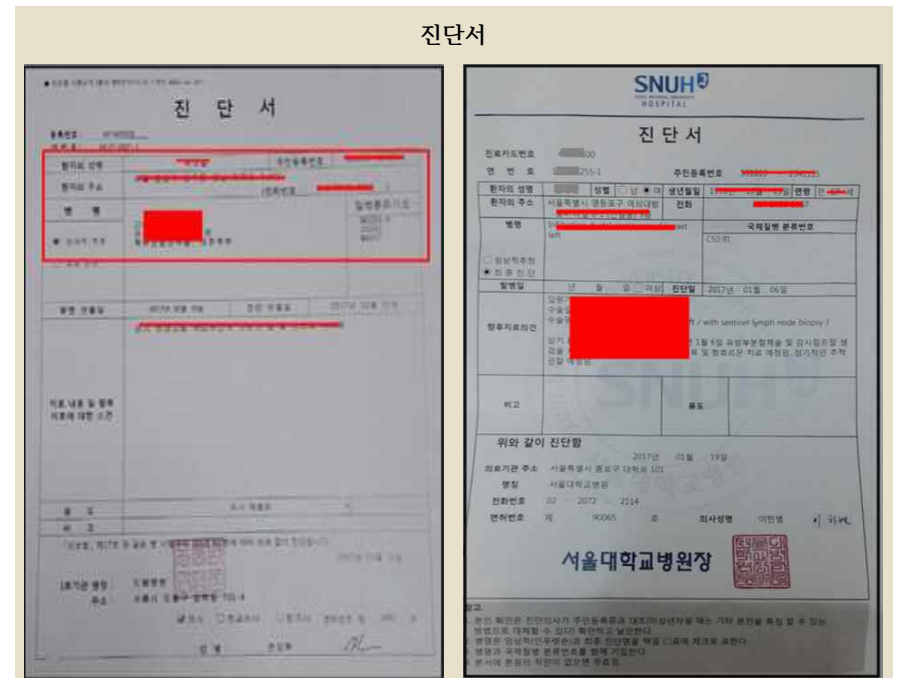
○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②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3호(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체크
 - ※ 개인의 자동차등록증을 첨부 시 공개제한부분은 “**6호(개인정보)**” 체크



하. 병원 진단서(첨부파일 노출)

- 병가신청 시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진단서”, “건강검진 통보서” 등 첨부파일에서 개인정보 노출 발생
 - ✓ 노출되는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 질병명, 치료내용 등
 - ✓ 진단서는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기록하므로 진단서 노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됨에 따라 주의 필요
-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할 경우 첨부파일에 대한 부분공개 처리필요
 - ① 첨부파일을 비공개하기 위해 공개유형을 “**부분공개**” 체크
 - ② 공개제한부분에서 비공개사유는 “**6호(개인정보)**” 체크



제5장 부 록

1. 개인정보 보호 참고자료

2. 정보공개 참고자료

1. 개인정보 보호 참고자료

개인정보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바로가기(링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링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바로가기(링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바로가기(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링크)

지침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다운로드(링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다운로드(링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다운로드(링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다운로드(링크)

개인정보 보호 세부기준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링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길라잡이(행안부)	다운로드(링크)
구글 웹마스터 삭제 요청 매뉴얼	다운로드(링크)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	다운로드(링크)

2. 정보공개 참고자료

정보공개 관련 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링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링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링크)

지침자료

2017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다운로드(링크)
2017 기록관리업무 매뉴얼	다운로드(링크)
2015 정보공개 사례집	다운로드(링크)

정보공개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다운로드(링크)
-------------------------------	--------------------------